

-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1. 4.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여성가족과]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여성가족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 국정과제 『온종일 돌봄 체계』 정책 발표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돌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1조~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제6조에서는 다함께 돌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과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또한 안 제7조~제15조에서는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제20조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 2021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 2021년 4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여건과 돌봄 수요에 맞춘 적절한 돌봄 사업과 서비스 지원하고자 하오니,
-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00821047
----------	----------

제출년월일: 2021. 4. 8.
제 출 자: 달서구청장
(여성가족과장)

1. 제정이유

- 국정과제 『온종일 돌봄 체계』 정책 발표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돌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나. 종합계획 수립 및 다함께돌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다.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5조)
- 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3. 11. ~3. 31.(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5)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 1건(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 규정 필요: 수용)

개선의견	개정의견 반영결과	
	반영 전	반영 후
지역돌봄협의체의 수행 기능과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이 없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직무 태만 등의 사유 발생 시에 해촉할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관련 규정 필요	제1조~제10조 (생략) < 신설 >	제1조~제10조 (조례안과 같음)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지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지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제18조 (생략)	제13조~제20조 (조례안과 같음)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관련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돌봄 서비스의 재원조달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 관련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함께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정규학습 시간 외의 돌봄, 방학 또는 휴일 돌봄, 긴급 돌봄 지원
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4. 건강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의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돌봄 종합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관할 교육지원청 돌봄사업 관계 공무원
 - 나. 지역 내 돌봄 시설 관계자
 - 다. 돌봄 분야 민간 전문가
 - 라. 돌봄 시설 이용 학부모

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

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15조(수당 등)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센터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기간,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련한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식·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의 지원에 따른 발생 비용

제19조(보험) ①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20조(예산·결산) 센터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체로 본다.

제3조(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법률 제17206호, 2020.10.01.시행)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7782호, 2020.12.29.시행)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가. 기간: 2021년부터 연중

나. 주요 내용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 체계를 구축

2. 비용발생 요인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 관련조문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6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6조~제17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21년부터 추진할 사업(3년)에 대한 비용 추계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목표

(단위: 개소)

연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개소수	2	1	1	0

나. 추계의 결과: 383,660천원

- 설치비: 140,000천원
 - 70,000천원(리모델링비 50,000+기자재비 20,000) × 2개소
- 인건비: 225,420천원
 - 2021년: 13,260천원(3개월분), 2022년 이후: 106,080천원(12개월분)
- 운영비 등: 18,240천원
 - (운영비) 2021년: 900천원(3개월분), 2022년 이후: 7,200천원(12개월분)
 - (회의수당) 2,940천원(70천원 × 7명 × 2회 × 3년)

다. 재원조달방안: 국비, 시비 및 구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68,120	142,460	84,960	295,540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57,500	57,500	0	115,000
" 인건비	9,945	79,560	79,560	169,065
" 운영비	675	5,400	5,400	11,475
세 출	85,140	184,260	114,260	383,660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70,000	70,000	0	140,000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	13,260	106,080	106,080	225,420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등 (공과금 등, 협의체 회의수당)	1,880	8,180	8,180	18,240
재원 조달				
소 계	68,120	142,460	84,960	295,540
국비보조금	52,080	101,640	56,640	210,360
시비보조금	16,040	40,820	28,320	85,180
구 비	17,020	41,800	29,300	88,120
지방채				
기 금				
기 타 (민자 등)				

6. 작성자: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장 이선미